



라이나손보

A Chubb Company
에이스손해보험의 새 브랜드입니다.

라이나손해보험
(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),
처브그룹 컴퍼니
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
라이나타워 14,15층

대표번호+82 2 2127 2400
고객센터1566 5800
www.chubb.com/kr

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Chubb 해외장기체류자여행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상해/여행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Chubb 해외장기체류자여행보험

3. 보험의 목적

- 1) 동산
- 2) 피보험자의 신체
- 3) 법률상의 배상책임
- 4)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- 1)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- 2) 실손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(1) 적용대상(단체계약 제외)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(2) 보험료 할인

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(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)로부터 영업보험료의 10%를 할인하여 영수한다. 다만,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한다.

7. 기타

1)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로 함
-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

2)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

- ① 대상자 : 만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
- ② 판매금지 :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

3) 해외여행 실손의료비중 국내치료비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

-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중 국내치료비의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최고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, 보장종목별로 분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,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.

구 분	보험종목		보험가입금액 한도
기본형	상해급여		5천만원 이내
	질병급여		5천만원 이내
특약형	상해비급여		5천만원 이내
	질병비급여		5천만원 이내
	3대 비급여	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중식치료	350만원 이내
		주사료	250만원 이내
		자기공명영상진단	300만원 이내

4) 이 보험은 해외장기체류자(해외유학·연수생, 교환교수, 상사주재원, 공무 등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자 및 부모, 배우자, 자녀)에 한해 인수한다.

5)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의 인수에 관한 사항

- 가. 신규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(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부가 서비스 등)의 경우,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인수한다.

- ① 카드 가입신청서에 보험가입에 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,
- ② 카드회원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(체크박스)을 표기함

[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안내 문구 예시]
 XX카드는 카드회사가 대표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며,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, 의무는 카드회사가 행사합니다.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XX카드가 부담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카드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- 나. 기존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(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 서비스 등)의 경우, 전화, 이메일, 문자메세지,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내용을 카드회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 인수한다.

6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
(1)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
①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
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(2) 기타

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
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Chubb. Insured.SM